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. 6. 21 선고 2022가단10162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6. 21.

주 문

1.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02. 7. 3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. 6. 14. 접수 제122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가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2. 7.
3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,571,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원고에게 3,571,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영하

별지